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배경훈 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,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「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(10.22., 관계부처 합동)」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,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, 소기업, 금융사업자,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·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”를 “전년도 말 기준”으로, “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자”를 “(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”라 한다)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
4. 전년도 말 기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8조(정보보호 공시) ①	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정보보호공시의무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	제8조(정보보호 공시) ①	-----	-----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-----	-----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		2. 전년도 말 기준	-----	-----
유가증권시장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) 또는 코스닥시장(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			-----	-----

장을 말한다)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자

3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”라 한다)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

<신 설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사의무자에서 제외한다.

1. 공공기관

2.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「중소기업기본

----- (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)
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”라 한다)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

4. 전년도 말 기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<삭 제>

<u>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</u> <u>른 소기업</u> 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<u>금융회사</u> 4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<u>전자금융업자로서 「통계법」</u> <u>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</u> <u>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</u> <u>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</u> <u>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</u> <u>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</u> 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53